

## 서울특별시영등포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

의안 번호	193
----------	-----

제출년월일 : 2005. 11. 17.

제 출 자 : 영등포구청장

### 1. 개정이유

우리구가 행정자치부에서 선정하는 행정혁신 선도기관 및 시범 평가기관으로 선정됨에 따라, 지방행정 및 공직자의 변화 혁신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“혁신기획단”을 한시적으로 설치하여 경쟁력을 갖춘 조직으로 만들어 업무의 효율성을 높임으로써 주민이 만족하는 구정을 구현하고자 함.

### 2. 주요골자

#### 가. 혁신기획단(한시기구) 설치운영

- 서울특별시영등포구행정기구설치조례 제4조 “부구청장 밑에 감사담당관을 둔다”를 “부구청장 밑에 혁신기획단(한시기구) 및 감사담당관을 둔다”로 한다.
- 부칙(신설) : 제1조(시행일)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.  
제2조(혁신기획단 존속시한) 혁신기획단 존속시한은 2007년 6월 30일까지로 한다.

### 3. 참고사항

#### 가. 관련근거 :

- 지방자치법 제102조(행정기구)
-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의 조직 및 정원기준등에 관한 규정 (대통령령18701호)제6조 (한시기구 설치 운영)
- 행정자치부 자치제도과 - 2887(2005.10.19)
- 서울시조직담당관-8021(2005.10.21)
  - 기획예산과 혁신분권팀을 행정혁신팀, 균형발전팀, 고재만족행정팀으로 분리·운영
- 구청장방침 기획예산과 - 5276(2005.09.21)호

#### 나. 예산조치 : 혁신기획단 설치운영에 따른 예산 확보

#### 다. 합의사항 : 합의되었음

- 1) 신·구조문 대비표 : 별첨
- 2) 입법예고문 : 생략

따로붙임 : 서울특별시영등포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(안)

서울특별시영등포구조례 제 호

### 서울특별시영등포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

서울특별시영등포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4조중 “감사담당관”를 “혁신기획단(한시기구) 및 감사담당관”으로 한다.

#### 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혁신기획단 존속시한) 혁신기획단 존속시한은 2007년 6월 30일까지로 한다.

### 신·구 조문 대비표

현행	개정안
<p>제4조 (국에 속하지 아니하는 보조·보좌 기관의 설치) 부구청장 밑에 <u>감사담당관</u>을 둔다.</p>	<p>제4조(국에 속하지 아니하는 보조·보좌 기관의 설치) -----<u>혁신기획단(한시기구) 및 감사담당관</u>----- -----</p>